

방재기상운영규정

제정 2010. 11. 30. 기상청 훈령 제684호

개정 2011. 5. 16. 기상청 훈령 제690호

일부개정 2012. 6. 18. 기상청 훈령 제728호

일부개정 2013. 6. 3. 기상청 훈령 제751호

일부개정 2014. 5. 19. 기상청 훈령 제777호

일부개정 2015. 3. 4. 기상청 훈령 제79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재기상조직

제2조(구성) ① 기상청의 방재기상조직은 별표 1과 같이 편성·운영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및 항공기상청장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방재지진화산에 관한 업무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3조(임무) ① 방재본부장은 청장으로 하며, 기상청 방재조직을 대표한다.

② 방재부분부장은 차장으로 하며, 방재본부장을 보좌한다.

③ 방재기상본부장은 예보국장으로 하며,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본부장 · 부분부장의 보좌
 2. 국립기상과학원, 지방기상청, 항공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등 소속기관을 포함한 방재기상업무의 총괄
 3. 방재비상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의 발령 및 해제
 4.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특별관측의 지시
 5. 태풍, 호우, 대설, 황사 등 위험기상 대응의 지휘 및 통제
- ④ 휴일·야간에는 방재기상본부장이 도착할 때까지 당직 총괄예보관이 방재기상본부장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
- ⑤ 방재기상부분부장은 예보정책과장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방재기상본부장이 과장급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기상본부장의 보좌
 2. 태풍, 호우, 대설, 황사 등 위험기상에 대한 언론, 관계 기관과의 협력
 3. 비상근무 중 국가기상센터 운영의 총괄
- ⑥ 위험기상대응반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취재 대응자료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2. 지상·고층·해양기상관측망 감시 및 관련 상황 대응 총괄
3. 국민, 유관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기상기후자료 작성 및 제공
4. 청사 및 시설물 관리, 안전점검 등 지원
5. 그 밖에 방재기상본부장이 지시한 사항

⑦ 상황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상재해관련 자료의 수집 및 상황보고
2. 비상근무 명령서의 작성
3. 방재기상본부장의 지시사항 수행 및 전파

⑧ 태풍반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태풍센터 태풍현업 수행

2. 태풍정보 발표 및 보도자료 작성과 언론대응
3. 태풍 실황·예측분석 및 브리핑 등 총괄예보관이 요청하는 사항
4. 태풍상륙 및 통과 시 태풍위원회에 자료 보고
5. 수치예보모델과 분석일기도 생산을 위한 태풍정보 제공

⑨ 총괄예보관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긴급방송의 요청
3. 기상속보 생산 및 자막방송의 요청
4. 131기동기상지원 업무
5. 휴일·야간에는 비상근무자 도착 시까지 상황반의 임무를 대신

⑩ 삭제

⑪ 삭제

⑫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특별대응반) ① 방재부분부장은 방사능, 유해화학물질, 산불 등에 의한 사회적인 재난발생으로 대외적인 대응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대응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대응반은 본청과 국립기상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 및 기상레이더센터의 직원을 포함하여 최적의 인적 자원으로 구성하며, 요청받은 부서(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특별대응반의 임무와 역할, 활동시한, 근무지 및 근무형태 등은 방재부분부장이 상황에 따라 부여한다.

제3장 방재비상근무

제6조(근무체제) ① 비상근무의 단계는 ‘경계근무’, ‘비상2급’, ‘비상1급’으로 구분하며, 그 단계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재기상조직의 비상근무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삭제

제7조(비상근무 명령) ① 방재기상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 단계별 기준에 도달하더라도 재해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비상근무 단계 및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 기상상황이 별표 3의 비상근무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

2.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해가 예상되었을 때

3. 사회적 대규모 재해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긴급한 기상지원이 필요할 때

② 당직 총괄예보관은 기상상황이 비상근무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될 때, 즉시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재기상본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야간에는 당직 총괄예보관이 비상근무발령 상황을 전파할 수 있다.

③ 당직 총괄예보관은 휴일·야간에 비상근무자가 도착할 때까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을 현업근무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험기상대응반의 대상부서는 본청 각 부서(단, 감사담당관은 제외한다)가 되며, 각 부서에서는 비상근무자명단을 방재기상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방재기상본부장은 순서를 정하여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에 따라 비상근무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⑤ 태풍상황에 대한 전국의 비상근무명령은 방재기상본부장이 발령하고, 해당 관서장은 즉시 태풍비상근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각 비상근무단계에 도달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령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방재기상본부장은 기상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비상근무단계 및 인원을 조정하여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 대상자의 응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여 응소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위험기상대응반의 각 부서장은 비상근무 연락을 담당할 연락책임자를 2명 이상 지정하여 방재대책기간 전에 방재기상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락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방재기상본부장은 비상근무 발령사항을 연락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락책임자는 비상근무 대상자가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발령된 경우와 교통두절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재기상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방재본부장은 심각한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에는 비상근무 대상자의 교육 및 휴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근무방법) ① 비상근무의 지시 및 해제는 인트라넷의 선진예보시스템(비상/근무)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행하고, 방재기상본부장은 매월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비상근무 및 비상근무해제 지시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 시간은 당일 오전 8시(또는 비상근무 발령 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재기상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비상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근무상황과 조치할 사항을 다음 근무자에

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 방재기상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방재기상조직 특정반원의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각 부서장은 야간(또는 휴일) 비상근무가 종료된 근무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특별관측을 수행한 근무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대체휴무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여하여야 한다.

⑥ 위험기상대응반은 방재기상본부장이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비치된 별지 제1호서식의 응소대장에 따라 응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특별기상지원

제9조(131기동기상지원) 당직 총괄예보관은 위험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관계 기관 담당자에게 기상상황과 전망 및 예·특보사항을 직접 전화로 설명하는 '131기동기상지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131기동기상지원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방송의 요청) ① 당직 총괄예보관은 기상현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KBS 등에 긴급방송을 요청한다.

1. 호우, 대설, 강풍, 황사 경보가 둘 이상의 광역예보구역에 발표되고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어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태풍의 중심이 별표 3의2에 따른 태풍 비상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지적이고 돌발적인 호우 또는 강풍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상현상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요청 대상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MBC, SBS, EBS, JTBC, 채널 A, TV조선, MBN, YTN, 뉴스 Y 등으로 한다.

③ 요청방법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긴급방송 요청문을 작성하여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인 KBS에는 전화로 확인한 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직 총괄예보관은 기상특보가 발표되어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긴급방송 실시의 필요성을 KBS 보도본부 담당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

제11조(기상속보) ① 당직 총괄예보관은 기상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위험기상 발생 상황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기상속보를 운영한다.

② 기상속보의 발표는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며, 필요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한 ‘자막방송 협조요청문’을 작성하여 요청 대상기관에 FAX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기술과장은 기상속보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이동통신의 활용) 당직 총괄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 관계기관, 방재담당자, 언론 등에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태풍, 호우, 대설, 황사 등 위험기상으로 인하여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낙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제5장 특별관측 및 특이기상현상 등의 보고

제13조(특별관측) 방재기상본부장은 방재기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층특별관측과 30분 간격의 지상특별관측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휴일·야간에는 당직 총괄예보관이 이를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태풍) 기상관서는 태풍특보가 발표되면 매시간 관측을 실시하고 관측전문은 정시관측 전문 형식, 항공기상관서는 METAR 전문 형식으로 입력한다.

제15조(강설) ① 기상관서는 강설현상이 있으면 매 시각 관측을 실시하고, 첫 강설이 시작되면 관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기상관서는 관할구역 적설자료 수집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하며, 강설 시에는 수시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6조(황사) 기상관서는 관할구역에 황사현상이 관측되면 즉시 관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특이현상의 보고) 기상관서는 관할지역에 특이기상현상, 장비장애 등이 발생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이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관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방재기상업무협의회

제18조(방재기상업무협의회의 설치) ① 방재기상본부장은 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방재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를 위하여 방재기상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방재기상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협의한다.

1. 방재기상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방재관계 기관별 방재대책

3. 방재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 방안

제1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방재기상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예보기술분석과장, 관측정책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기후예측과장, 수치모델개발과장, 관측예보연구과장, 레이더분석과장

2. 외부위원: 방재관계 기관의 재난관련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보정책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자연재난대책기간과 연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⑤ 각 지방기상청장 및 기상대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부칙<제684호 2010.11.30.>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90호 2011. 5.16.>

이 규정은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28호 2012. 6.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51호 2013. 6.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77호 2014. 5.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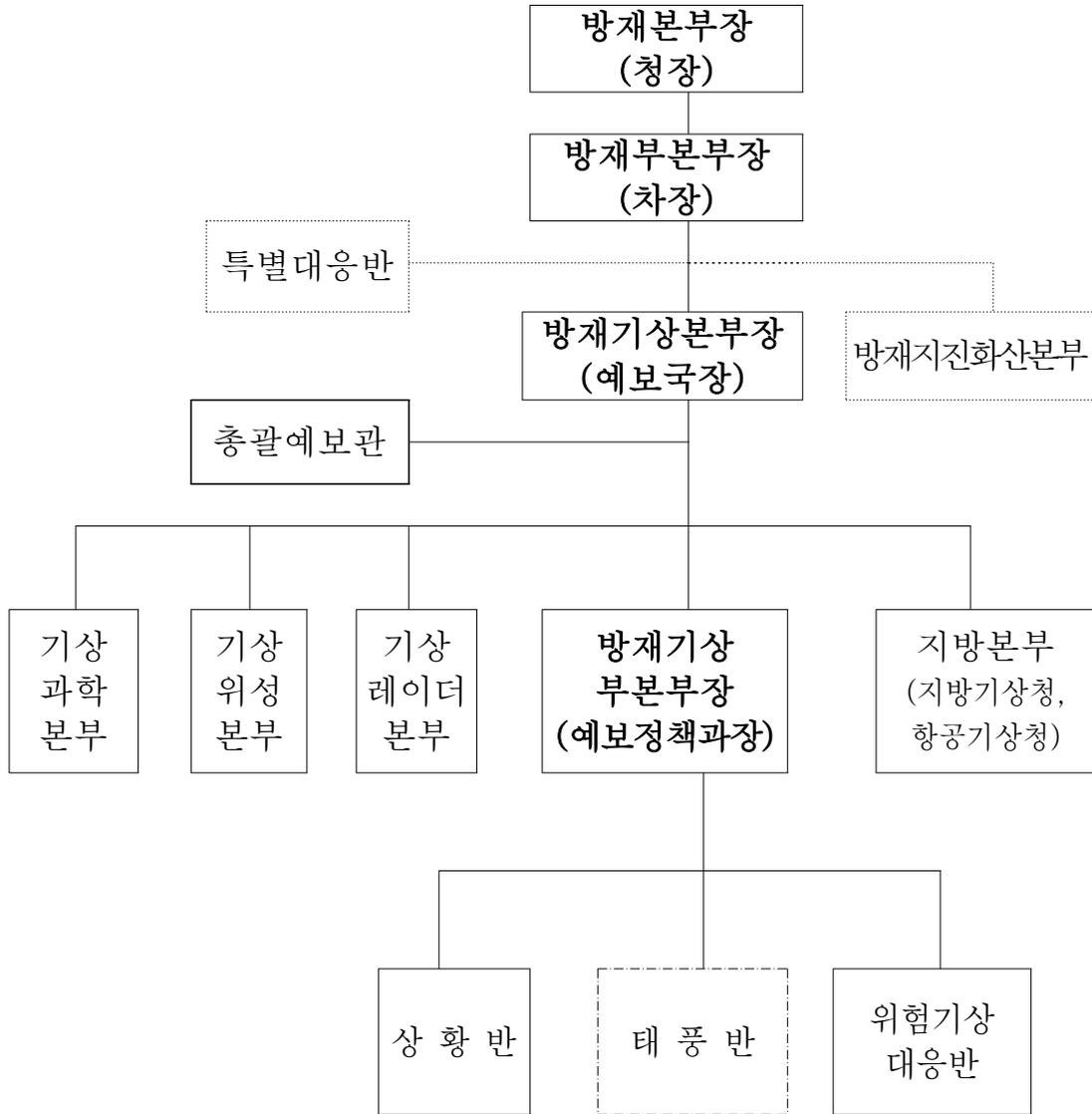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93호 2015. 3.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방재기상조직(제2조제1항 관련)



□ : 해당 비상시에 한하여 운영

[별표 2]

방재기상조직의 방재기상근무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경계근무		비상2급		비상1급	
		구성	인원 (명)	구성	인원 (명)	구성	인원 (명)
방재기상 본부장		예보국장	(1)	예보국장	1(1)	예보국장	1
방재기상 부분부장		예보정책과장		예보정책과장		예보정책과장	1
상 황 반	반장	사무관급이상	(1)	사무관급이상	1(1)	사무관급이상	1(1)
	반원	주무관	1(1)	주무관	1(2)	주무관	2(3)
태 풍 반	반장	사무관급이상	(1)	사무관급이상	(1)	사무관급이상	1
	반원	주무관/사무관	(1)	주무관/사무관	1(1)	주무관/사무관	2
위험기상 대응반		주무관/사무관	-	주무관/사무관	4	주무관/사무관	8

- ※ ()는 방재기상본부장의 상황 판단에 따라 추가되는 비상근무자임
- ※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하급자가 이를 대행한다.
- ※ 위험기상대응반의 대상은 다음의 본청 각 국실이 되며, 주무부서에서는 비상단계별 근무자명단을 방재기상본부장에서 제출하고, 방재기상본부장은 순서를 정하여 비상근무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 대상부서 : 대변인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관측기반국, 기후과학국, 기상서비스진흥국
- ※ 위험기상대응반은 방재기상본부장이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별표 3]

방재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분	경계근무	비상2급	비상1급
태풍 비상	태풍의 중심이 12시간 이내에 비상구역으로 이동이 예상 될 때	태풍이 비상구역 또는 경계구역 내에 위치하고 12시간 이내에 해상에 보구역에 태풍특보가 예상될 때	태풍이 비상구역 또는 경계구역 내에 위치하고 12시간 이내에 육상에 보구역에 태풍특보가 예 상될 때
호우 비상	관할구역에 호우특보가 예상되거나, 관할구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될 때	관할구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되었거나, 호우경 보가 예상될 때	관할구역에 호우경보가 발표되어 대규모 재해가 예상될 때
대설 비상	관할구역에 대설특보가 예상되거나, 관할구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될 때	관할구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었거나, 대설경 보가 예상될 때	관할구역에 대설경보가 발표되어 대규모 재해가 예상될 때
황사 비상	관할구역에 황사특보가 예상되거나, 관할구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될 때	관할구역에 황사주의보가 발표되었거나, 황사경 보가 예상될 때	관할구역에 황사경보가 발표되어 대규모 재해가 예상될 때
위험 기상 비상	복합적 위험기상 현상 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이 예상될 때	복합적 위험기상 현상 으로 중대한 재난 발 생할 때	복합적 위험기상 현상 으로 광역적이고 심각한 재난이 임박하거나 발 생이 예상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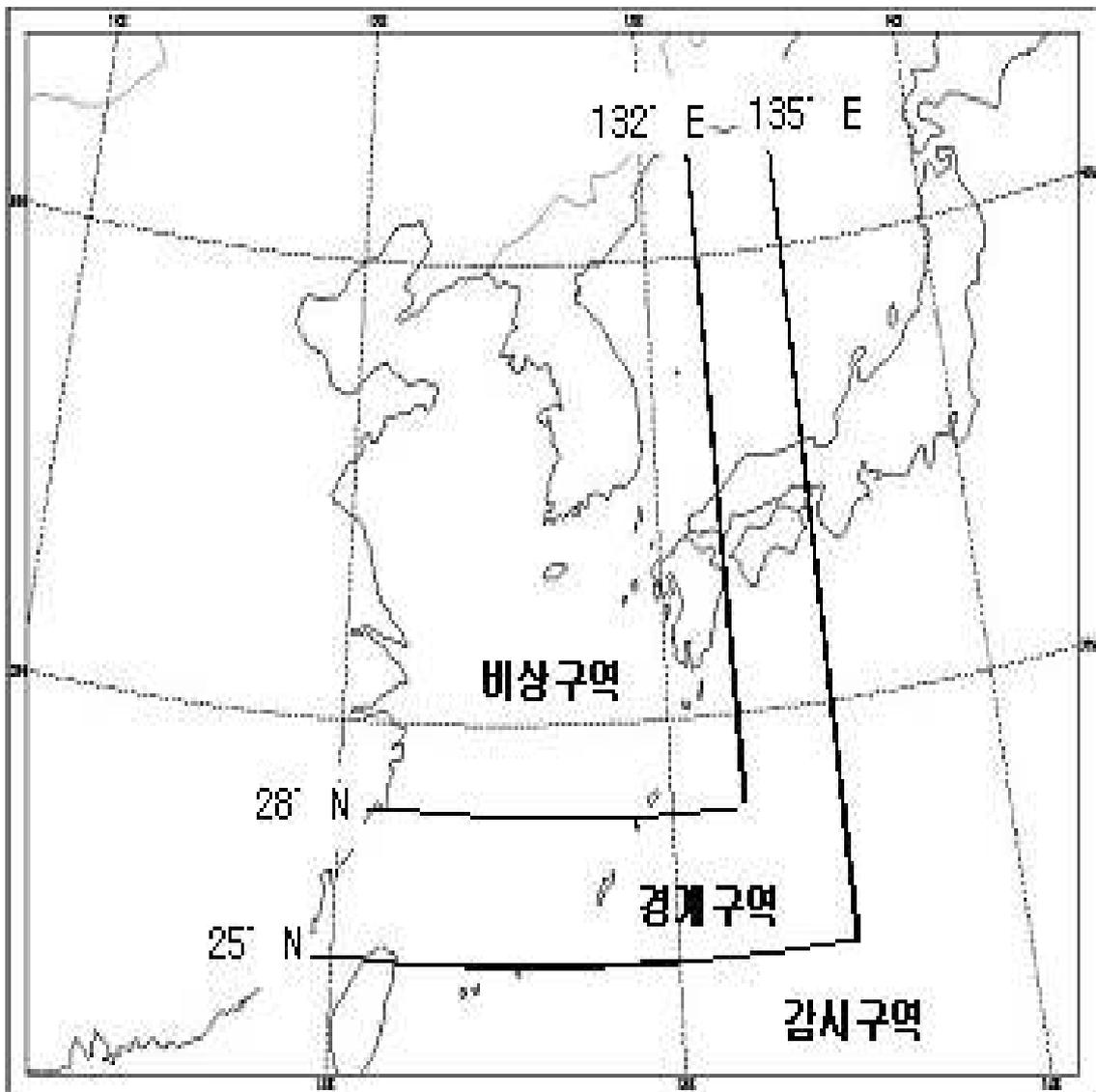
※ 본청 방재비상근무는 ① 태풍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지역의 특
보발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② 제주를 제외한 육상 3개 특보관서 이상에서 주의보 또는
2개 특보관서 이상에서 경보가 발효 중일 경우 경계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단계를
높여 운영한다.

※ 태풍의 비상경계감시구역은 별표 3의2와 같다.

[별표 3의2]

태풍의 비상·경계·감시구역(별표 3 관련)

구분	기준
비상구역	태풍의 중심이 북위 28° 북쪽, 동경 132° 서쪽에 위치한 경우
경계구역	태풍의 중심이 북위 25° 북쪽, 동경 135° 서쪽에 위치한 경우
감시구역	태풍의 중심이 북위 25° 남쪽, 동경 135° 동쪽의 북서태평양 구역



[별표 4] 삭제

[별지 제1호서식]

위험기상대응반 비상근무 응소대장
(제8조제6항 관련)

- 년 월 일 시 분 (○○ 경계근무 · 비상2급 · 비상1급)
- 년 월 일 시 분 (○○ 경계근무 · 비상2급 · 비상1급)
- 년 월 일 시 분 (○○ 경계근무 · 비상2급 · 비상1급)
- 년 월 일 시 분 (○○ 경계근무 · 비상2급 · 비상1급) 해제

부서명	직·성명	응소시각	임무 및 역할	연락번호		비고
				구내	핸드폰	
대변인· 운영지원과						
기획 조정관						
관측 기반국						
기후 과학국						
기상 서비스 진흥국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2.6.18.>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2.6.18.>

[별지 제4호서식]

131기동기상지원 일지
(제9조 관련)

기상청 총괄예보관

지원일시	년 월 일 시 분	결재	담당	사무관	과장
근무자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수신자	비고	
지원 내용 (간략히 기재)					

[별지 제5호서식]

긴 급 방 송 요 청
(제10조제3항 관련)

기상청 총괄예보관 ○○○
년 월 일 시 분

수 신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MBC, SBS, EBS, JTBC, 채널 A, TV조선, MBN, YTN, 뉴스 Y

번 호 : 긴급방송 0000-00호

제 목 : 태풍경보에 따른 긴급방송 요청

「기상법」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방송을 요청하오니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방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 송 문 안 -

년 월 일 ○○지역에 ○○경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지역에서는 강한 비와 함께 강풍으로 인한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 해안지역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폭풍해일로 침수가 예상되오니 침수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기상실황, 기상정보 등 기상자료 추가